

都市 勤勞者家口の 慶弔金 支出規模 分析

裴花玉·李必道

과거 혼례, 장례 등 가정의례에서 相扶相助의 의미로 주고 받던 慶弔事金이 최근에는 가계경제에 부담이 될만큼 과다 금액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일부 계층의 지위나 권력의 과시수단과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수단으로 변질되어 社會的 違和感을 조성하는 逆機能性을 내포하게 되었다.

현행 가정의례에 있어서 과생되는 경조금 문제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경조금 문제에 대한 접근도 사회현상의 일부로 이해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의례에 있어서 도시 근로자가구의 경조금 지출수준을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경조금 과다지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경조금 지출관행의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전한 경조금 지출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慶弔事文化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무분별한 하객 초청 행위와 신문 등 인쇄물을 통한 訃告行爲 제한, 경조금의 부담 범위와 규모를 제한하는 조치,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공공부문 종사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등의 방안을 들었다. 경조사와 관련된 制度改善의 실현은 일반 국민들이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용어 : 경조금, 도시근로자 가구, 지출관행

筆者: 裴花玉-本院 主任研究員, 李必道-本院 責任研究員

▶ 원고를 검독하여 주신 徐文姬 責任研究員과 洪碩杓 責任研究員께 감사드립니다.

I. 序 論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사람들은 일상 생활의 모든 면에서 상호부조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예로부터 우리는 혼례 및 상례와 같이 일시에 목돈이 필요로 하는 가정의례에 있어 감정적 위로, 직접적 봉사 외에도 금전적 부조를 통해 상호 도움을 주고 받았다. 우리나라의 상호부조 유형은 血緣이 최우선이었으나 도시화 및 산업화 진전에 따라 혈연중심을 넘어 地緣, 學緣, 職緣, 모임연 등과 같이 점차 가족·친족에서 사회관계로 범위가 점차 넓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상호부조의 범위의 확장과 함께 그 의미도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가운데 學緣은 선후배 관계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세력을 구성하려는 의도에 기초하여 상호부조 관행을 확장하기 때문에 단순히 또래집단에 대한 온정적 부조의 의미를 넘어 사회적 연결망 형성 기능으로 점차 변모된 경우로 볼 수 있다. 職緣은 사회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집단 내에서 합리적, 계약적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직연에 의한 상호부조도 과거의 정서적 부조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화의 사회적 교환으로 바뀌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과거 相扶相助의 의미로 주고 받던 경조금 관행이 일부 계층의 지위나 권력의 과시수단과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수단으로 변질되어 社會的 違和感의 조성이라는 逆機能性을 내포하게 되었다.

家庭儀禮에 있어서 상호부조 형태인 慶弔金의 과도한 지출은 가계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경조금과 관련된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은 무엇이고, 어떠한 조건과 요인들에 의해 경조사 비용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현행 가정의례에 있어서 파생되는 경조금 문제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국한된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경조금 문제에 대한 접근도 사회현상의 일부로 이해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경조금 문제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지출 실태 및 그 원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정의례에 있어서 도시 근로자 가구의 경조금 지출 수준을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경조금 과다 지출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한 다음 그 결과 건전한 경조금 지출관행의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 한다. 즉 체면유지와 과시적 행태의 경조금 과다지출을 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가정의례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II. 分析方法 및 資料

일반적으로 경조사 관련 비용은 혼례 및 장례 등의 가정의례를 주관하는데 드는 관혼상제비와 경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경조비 또는 경조금을 포함한다. 관혼상제비는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 치르게 되는 통과의례인 출생의례(백일, 돌), 혼례(결혼식), 상례(장례식), 제례(제사)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관혼상제비는 보통 범위가 개인 및 가족·친족에 국한되고 횟수가 적으나 한 번에 드는 비용이 큰 반면에, 경조금 또는 경조비는 한 번에 드는 금액은 적으나 가족, 친척, 직장동료, 학우, 이웃, 지역 사회 등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전체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형편이다.

경조금¹⁾은 다시 결혼식, 돌·백일잔치, 회갑·칠순잔치에 내는 축의금과 장례식에 내는 조의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이 둘을 합쳐

1)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는 관혼상제비와 경조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경조사 관련 비용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음. 본 고에서는 경조비를 다시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경조금으로 일괄 지칭함.

타인의 경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모든 경조금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는 자료의 성격상 가정의례의 유형에 따른 경조금 지출 자료가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경조금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나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구체적인 경조금의 지출규모와 지출특성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²⁾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고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정의례비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경조금 지출실태 및 지출특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경조금 지출실태에서 밝혀진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독립변수, 경조금 지출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들 요인들이 경조금 지출 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셋째, 이러한 통계 분석적 방법을 통해 제한된 자료이나마 우리 사회에서 경조금으로 지출되는 총비용 규모를 추정하고 경조금 지출의 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 경조금의 지출규모 및 지출특성을 규명하고자 통계청의 1996년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raw-tape)를 이용하였다. 1996년도 5,500 표본도시가구중 소득의 파악이 어렵고 편차가 심하여 경조금 지출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직종인 자영업자, 개인 또는 법인 경영자, 자유업자를 제외하고, 총 3,935 도시 근로자가구에만 국한하여 경조금 지출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전국 72개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전국적인 표집을 하고 있으나, 단독가구,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³⁾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농어촌가구에

2) 경조금과 관련한 조사로는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1994년 전국 6대도시, 1997년 전국 11대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20~59세)를 대상으로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구별하여 실시한 『경조비 실태 조사』가 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6)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조의금에 대하여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3) 음식점, 여관, 하숙업 등을 경영하는 겸용 주택가구로서 영업수지와 가계수지를 분리하기 곤란한 가구 또는 가구원의 구성이 가족을 위주로 하지 않는 혼성된 가구를 말함.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1996, p.3.

대한 경조금 지출정보가 획득된다면 전국적인 경조금 총지출규모를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 ‘경조비’ 항목은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출금액을 통합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결혼식, 장례식, 잔치 등 목적별 그리고 대상별 경조금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도시가계조사」 자료로서는 1회 평균 경조금 지출금액과 연간 평균 경조사 참석 횟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Ⅲ. 慶弔金 支出 規模 및 特性

1. 年度別 慶弔金 支出 推移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기초로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의 경조금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절대금액에 있어 6.5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1995년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였을 때는 같은 기간동안 1.8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도시 근로자들의 경조금 지출규모는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서도 연평균 7.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表 1 참조). 도시근로자의 경조금은 소득 및 소비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무엇보다도 경조금 지출 규모 자체의 증가보다 소득 및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경조금 비율의 상승 추이가 뚜렷함이 관찰된다. 월평균소득 대비 경조금 지출률은 1985년 1.2%였던 것이 1996년 1.9%로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소비지출 대비 경조금 지출률은 1.6%에서 2.9%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하나 주목할만한 양상은 근래에 이르러 도시 근로자들의 소득 및 소비지출에서 경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1994년 이후 최근 3년 동안에는 도시 근로자들이 월평균소득의 약 2%, 소비지출의 약 3%까지 경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경조금 지출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회 전반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저축추진중앙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994년에는 경조사에 참석한 횟수는 연평균 14.0회이고 1회 평균 경조금은 32,200원이었으나, 1997년에는 연평균 경조사 참석횟수가 11.7회로 줄고 1회 평균 경조금은 38,000원으로, 월평균은 37,000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 수치는 해당 연도의 도시근로자 가계조사에서 나온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최근에 들어 경조금 지출의 절대금액과 소득 및 소비지출 대비 상대 비율이 증가된 것은 경조사 참석횟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1회 평균 경조금 지출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과 대비하여 1회에 지출하는 경조금액이 커진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넘어 과소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경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 慶弔金 支出規模

1996년도 도시근로자 가계조사를 분석해 보면 근로자 1가구는 매월 평균 39,300원, 연간 472,000원을 경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저축추진중앙위원회, 『경조비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1997, pp.13~14. 「도시가계조사」 자료로서는 경조사별 1회 평균 경조금 지출규모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表 1〉 年度別 月平均 慶弔金 推移

(단위: 원, %)

연도	경조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소비지출액	
	경상금액 (a)	1995년도 불변가격	증가율 ²⁾	경상금액 (b)	a/b	경상금액 (c)	a/c
1985	5,500	20,400	-	456,800	1.2	338,800	1.6
1986	6,000	21,000	2.9	481,000	1.2	339,000	1.8
1987	6,600	21,600	2.9	561,700	1.2	388,300	1.7
1988	7,800	23,100	6.9	657,200	1.2	453,900	1.7
1989	10,500	24,500	6.1	804,900	1.3	561,700	1.9
1990	12,900	26,600	8.6	943,300	1.4	650,000	2.0
1991	16,000	29,000	9.0	1,158,600	1.4	779,600	2.1
1992	20,900	30,900	6.6	1,356,100	1.5	902,500	2.3
1993	22,400	32,300	4.5	1,477,800	1.5	986,200	2.3
1994	30,900	34,400	6.5	1,701,300	1.8	1,113,700	2.8
1995	35,900	35,900	4.4	1,911,100	1.9	1,230,600	2.9
1996	41,100 ¹⁾	37,700	5.0(14.5) ³⁾	2,152,700	1.9	1,395,400	2.9
1985 ~ 1995			연평균 7.6		연평균 1.5		연평균 2.2

註: 1) 1996년도 경조금 경상금액은 통계청이 조사한 총 5,233가구에 대한 조사 발표 수치임.

2) 1995년도 불변가격에 대한 증가율임.

3) ()의 수치는 실제 통계청 조사 금액의 증가율을 계산한 것임.

資料: 1)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2) _____, 『한국주요경제지표』, 1997. 3.

이는 해당 연도 전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인 2,152,700원의 1.8%에 해당되며, 월평균 소비지출인 1,395,400원의 2.8%에 해당된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도시 근로자 가구의 경조금 총지출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경조금 472,000원에 전체 도시가구 가운데 2인 이상 가구수 8,850,000⁵⁾을 곱하면 4조 1771억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⁶⁾.

5) 1996년도 전도시가구수를 구득치 못하여 1995년도 수치를 이용하였음. 1995년 전 도시가구 가운데 2인 이상 가구비율은 88.2%로 8,850,000가구임.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

도시근로자 가구당 지출한 평균 경조금 규모는 매월 39,300원이지만, 이를 조사기간인 1년동안 경조금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한 가구 13.5%를 제외하면 가구당 매월 평균 45,5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간 경조금 지출도 546,000원에 이르고 있다(表 2참조).

경조금 지출이 있는 86.5%에 해당되는 근로자 가구만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1만원 미만'이 16.9%, '1~3만원 미만'이 30.7%, '3~5만원 미만'이 20.3%, '5~10만원 미만'이 22.0%, 그리고 '10만원 이상'이 10.1%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과반수를 넘는 비율이 매월 3만원 이상의 경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이르러 결혼식 혹은 장례식에 참석하여 내는 경조금 규모가 2~3만원이 보통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 도시근로자 가구가 월평균 1회 이상의 경조금을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表 2〉 月平均 慶弔金 支出分布

(단위: 원, %)

전체 평균	지출 없음	지출있음 ¹⁾					
		평균	1만원 미만	1~3만원	3~5만원	5~10만원	10만원 이상
39,300 (100.0)	13.5	45,500 (100.0)	16.9	30.7	20.3	22.0	10.1

註: 1) 경조금 지출이 있는 가구비율은 86.5%임.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6.

또한 매월 10만원 이상 연간 120만원 이상의 과도한 경조금을 부담하는 가구는 경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전체 가구의 10.1%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10%의 경조금 과다지출 가구가 분석대상 전체가구(3,935가구)가 지출한 경조금의(1억 5천5백만원) 1/3 이상인 5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조금 지출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

6) 정확한 경조금 지출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별, 직업종류별, 가구특성별 경조금 지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요구된다.

는 점이다.

한편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조금은 경조사 종류보다 오히려 경조대상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난다. 경조 대상별 1회 평균 경조금은 친지 42,000원, 직장동료 37,000원, 이웃 34,000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례식 41,000원, 회갑·칠순잔치 39,000원, 결혼식 36,000원, 돌·백일 34,000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7: 14).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경조금 지출을 분기별로 나누어 보면 예상대로 늦가을과 봄철이 가장 지출이 높게 나타난다. 장례식, 회갑·칠순잔치, 제사 등은 특정 달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행사가 아니므로, 이같은 계절적 변동은 대체적으로 결혼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식이 기피되는 계절인 여름철(3/4분기)과 결혼식이 집중되는 가을 및 초겨울철(4/4분기)의 경조금 지출규모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이 이를 대변해 준다.

〈表 3〉 分期別 平均 慶弔金 支出分布

(단위: 원)

분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전체
경조금	40,800	43,600	25,600	55,000	39,300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6.

3. 社會經濟的 特性別 慶弔金 支出

1) 所得 및 消費支出과의 關係

앞에서 도시근로자 가구가 지출하는 경조금은 월평균소득의 1.8%를 차지하고 소비지출의 2.8%를 차지함을 지적하였다. 소비지출항목의 하

7) 일반적으로 3~5월을 봄, 6~8월을 여름, 9~11월을 가을, 그리고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를 겨울로 하고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편의상 분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나인 경조금 지출은 무엇보다도 소득수준 및 소비지출 규모에 의하여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경조금 지출도 많이 할 것이지만 소득 및 여타 소비지출 규모와 비교할 때 상대적인 비율은 오히려 낮아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분석 결과는 이러한 예상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과 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경조금의 절대금액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에서 경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차이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경조금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경조금 부담률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⁸⁾의 경우 2.0%를 넘고 있으나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2.0% 이하 수준에 머문다. 특히 최저생계비 수준⁹⁾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의 경우에는 소득의 3.6%까지 경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빈곤가구조차도 경조금을 매월 평균 1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것은 경조금 관행이 저소득층에서 더 나아가 빈곤층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저소비층과 빈곤층의 경조금 지출비율이 결코 낮지 않은 것은 가정의례에서 남의 이목 중시와 체면지키기 풍조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8) 1996년도 『도시가계조사』 자료에 의하면 분석대상 가구의 평균소득은 204만원, 중위소득은 183만원, 상위 75%수준 소득은 253만원, 하위 25%수준 소득은 131만원이었음. 연구의 편의상 250만원 이상 소득집단을 고소득층, 100만원 미만 소득집단을 저소득층으로 하고, 100~250만원을 중소득층으로 구분하였음.

9) 도시가구의 경우 1994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인당 17.8만원으로 추계되었으며(박순일·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1994), 1994년도 수치에 소비자물가 상승분(109.6)을 계상하면 1996년 4인가구 1인당 최저생계비는 19.5만원임. 따라서 도시가계조사에서 단독가구가 제외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을 빈곤층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임.

〈表 4〉 所得 및 消費支出 對比 慶弔金 支出分布

(단위: 원, %)

	평균금액 (a)	가구구성비	경조금 (b)	b/a
소득수준별				
500,000 이하	349,000	0.8	12,700	3.6
500,000~1,000,000	802,000	10.5	16,800	2.2
1,000,000~1,500,000	1,262,000	23.0	24,900	2.0
1,500,000~2,000,000	1,744,000	23.4	32,300	1.9
2,000,000~2,500,000	2,240,000	16.5	40,500	1.8
2,500,000~3,000,000	2,736,000	11.1	52,700	1.9
3,000,000 이상	3,966,000	14.7	78,900	2.0
전체	2,043,000	100.0	39,300	1.9
소비지출수준별				
500,000 이하	413,000	3.7	10,400	2.5
500,000~1,000,000	787,000	34.6	22,100	2.8
1,000,000~1,500,000	1,228,000	32.8	37,500	3.1
1,500,000~2,000,000	1,707,000	15.5	54,300	3.2
2,000,000~2,500,000	2,216,000	6.2	72,700	3.3
2,500,000~3,000,000	2,715,000	3.6	82,300	3.0
3,000,000 이상	4,017,000	3.6	85,700	2.1
전체	1,335,000	100.0	39,300	2.9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6.

경조금 지출을 가구의 소비지출과 비교해 보면, 中間消費 階層¹⁰⁾에 해당되는 월평균 100~200만원 소비지출 가구는 소비지출의 3% 이상을 지출하며, 월 200~300만원의 비교적 高消費 階層 가구는 가장 높은 비율인 3.3%를 경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반면 소비지출 수준이 매우 낮거나 가장 높은 경우 경조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5%, 2.1%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300만원을 넘어서는 고소비 상층의 경우 여타 집단에 비해 경조금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이 가장 낮

10) 분석대상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는 평균 133만원, 상위 95%수준은 275만원, 상위 75%수준은 159만원, 하위 25%수준은 85만원, 하위 5%수준은 54만원이었음. 연구의 편의상 100~200만원 소비지출 집단을 임의적으로 중산층으로 구분하고, 200만원 이상 소비층을 고소비층으로 구분하되 200~300만원 소비지출 집단을 고소비 하층, 300만원 이상 소비지출 집단을 고소비 상층으로 재구분하였음.

음을 볼 수 있다.

2) 人口社會的 特性과의 關係

다음은 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경조금의 지출수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表 5 참조). 먼저 서울과 기타 도시간의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서울이 전국의 다른 도시들보다 경조금의 지출수준이 1.2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식 및 장례식과 관련하여 과비용을 유도해내는 상업주의 환경이 타도시에 비해 더 잘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타도시에 비해 사회연결망의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조금의 지출수준도 높은 것으로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表 5〉 家口主의 人口社會的 特性別 慶弔金 支出分布

(단위: 원)

	경조금
지역별	
서울	45,300
기타 도시	37,700
성별	
남	41,900
여	27,200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36,500
고졸	36,800
대졸 이상	48,400
가구유형별	
일반가구	37,100
맞벌이가구	48,500
전체	39,300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6.

성별로 보면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보다 경조금 지출이 훨씬 높고,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졸업자와 비졸업자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활동을 광범위하게 하는 남성들이 여성보다는, 대졸자가 고졸 이하자 보다 경조사에 직·간접적으로 빈번하게 참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일반가구와 맞벌이가구로 대별하였을 때, 맞벌이가구가 일반가구보다 경조금 지출이 1.3배나 높다. 이는 경조금 지출이 가구 구성원들의 사회활동의 범위와 비례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表 6>에서 경조금 지출을 직업별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50대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0대의 경우 가장 많은 월평균 69,900원을 경조금으로 지출하고 있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에서 월 60,6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0대의 경우 36,900원을 지출하여 50대 및 60대 이상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사회활동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 50대에 들어 가장 광범위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 연령층에 이르면 어느 정도 직위가 높아져서 직위에 상응하여 경조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퇴직연령층인 60대에도 경조금 지출규모가 적지 않은 것도 자녀들의 결혼이 50~60대에 집중되게 되어, 자녀의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에 대한 교환행위로서 자신이 타인의 경조사에 부조를 하는 관행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60대 이상은 가족, 친족, 동료, 이웃의 사망 경우가 타연령대에 비해 훨씬 많으므로 조의금 지출부담 및 조의금 교환이 늘어나는 것도 또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30대 및 40대의 경조금 지출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와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아직 결혼 연령에 이르지 않았고 경조금의 상호교환 행위를 해야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경조금 지출은 직업유형에 따라 확연한 격차를 보여준다. 공무원을 비롯하여 사무직원 등 소위 '화이트칼라' 직업군이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기능공, 근로자, 노무자 등으로 구성된 '블루칼라' 직업군에 비해

1.4배¹¹⁾나 많은 경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및 사무직 종사자들이 육체 노동자들에 비해 안정된 조직생활을 영위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공무원 직업군에서는 60대 이상 연령층이 매월 10만원 이상의 월등하게 많은 경조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타 직종에 비해 퇴직연령이 늦어져서 사회적 인망을 계속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연공서열제의 공무원 사회에서 60대 이상의 연령이면 고위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아져 이같은 경조금 지출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¹²⁾. 따라서 현재의 왜곡된 경조금 문화를 선도하고자 할 때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종사자의 직업군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있다.

〈表 6〉 家口主의 年齡層 및 職業種類別 慶弔金 支出分布

(단위: 원)

직종 분류 ¹⁾ \ 연령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공무원	41,500	64,900	105,700	126,400	64,400
사무직 종사자	37,400	48,400	86,000	77,400	43,400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	27,800	31,600	66,600	48,700	35,500
임시직 및 일용노무자	18,300	23,000	46,600	47,000	28,400
전체	31,500	36,900	69,900	60,600	39,300

註: 1)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 가구구분에 따른 직종분류임.
 資料: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6.

11) 공무원 및 사무직원 등 사무직종의 매월 평균 경조금은 48,200원인데 반해, 기능공, 노무자 등의 육체노동직종의 매월 평균 경조금은 33,800원임.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1996.

12) 이들 직업군의 개별 가계조사에서 지출되는 경조금 지출수준이 이정도라면 추산에 잡히지 않는 실제 경조금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IV. 慶弔金 支出 決定要因 分析

앞 장에서는 도시근로자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경조금의 지출규모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단순 비교분석은 사회경제적 특성변수들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변수가 더 경조금 지출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경조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계측되어야만 경조금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어떤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앞서 단순비교에 활용된 몇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조금 지출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소득은 연속변수로 그대로 이용하였지만 연령은 연령대별로 가변수화 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들 중에서 소득과 소비지출 변수간의 상관성이 높아 소비지출 변수를 제외하였고, 교육수준도 연령 및 소득과 상관성이 높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전체 경조금 지출변량의 20%가 설명되었으며, 독립변수 가운데 40대 연령층만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경조금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단순비교 결과로 부터 예상할 수 있듯이 소득수준이 경조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난다. 소득차이에 대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단위를 표준화시킨 표준회귀계수의 규모가 0.32로 다른 어떤 변수보다 높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이 동일한 경우, 서울 거주자는 타도시 거주자보다 월평균 4,991원을 더 경조금을 지출하며, 또한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보다 7,282원 더 경조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연령이 50대 이면 30대 이하에 비해 매월 28,247원을, 60대 이상이면 30대 이하에 비해 매월 27,531원을 경조금으로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층의

차이는 표준회귀계수를 보더라도 소득수준 다음으로 높아 경조금 지출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表 7〉 慶弔金 支出 決定要因 推定 回歸分析

변수	B	β (표준회귀계수)
절편	-9,343.84	-
소득 ¹⁾	14.17	0.32**
지역 (서울=1)	4,990.57	0.05**
성별 (남자=1)	7,281.96	0.06**
연령층 ²⁾		
40대	1,432.39	0.01
50대	28,247.00	0.21**
60대 이상	27,531.00	0.11**
직업유형 ²⁾		
공무원	15,732.00	0.09**
사무직원	6,332.52	0.06**
기능공 및 상용근로자	5,862.79	0.06**
Adj R ² (F값)	0.2048 (113.584**)	

註: 1) 소득은 단위가 1,000원임.

2) '30대 이하', '임시직 및 일용노무자' 직업군은 준거범주로 제외되었음.

3) ** p < .01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잘사는가 못사는가 여부와 본인의 연령수준에 따라 경조금 지출의 과소와 횡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직업이 경조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앞의 단순비교에서와 같이 사회적으로 공무원과 사무직이 경조금으로 돈을 더 지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임시직 및 일용노무직 직업군과 비교할 때, 소득, 연령, 교육수준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무원 직업군은 매월 15,732원을 더 경조금으로 지출하며, 사무직 직업군은 매월 6,332원을 더 지출하고 있으며 경조금 지출에 있어서 이같은 직종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공무원의 경조금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의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경조금 부담 예측치를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55세인 남자 공무원의 월평균 경조금을

계산해 보자. 이 공무원의 월평균 소득이 세금공제전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평균 경조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경조비 } Y = b_0 + b_{1x1}(\text{소득}) + b_{2x2}(\text{지역}) + b_{3x3}(\text{성별}) + b_{4x4}(\text{연령층}) + b_{5x5}(\text{직업유형})$$

$$\begin{aligned} \text{경조비} &= -9,343.84 + 14.17 \times 2,000 + 4,990.57 + 7,281.96 + 28,247 \\ &+ 15,732 \approx 75,188 \text{원} \end{aligned}$$

사례로 든 공무원의 월평균 경조금은 75,188원으로서 소득의 3.8%에 달하며, 도시가계의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64.8%)에 준하여 산정한 소비지출 130만원의 5.8%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경조금의 결정요인 분석결과에서 유추해 볼 때 경조금의 과다한 지출은 일부 고소득계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종사자부터 우선적으로 바로잡아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V. 結論 및 政策建議

가정의례 관행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만 향후에도 가정의례가 내포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결속강화와 같은 핵심적 기능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경조사 관련 비용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양식과 가족구성원의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회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조금과 관련된 사회병리적 현상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경조금 과다지출 관행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경조금 지출이 확대된 사회적 원인을 먼저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가장 뚜렷한 원인으로서는 한국인·한국사회의 체면문화를 들 수 있다. 소위 중산층 이상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고 체면유지

와 남의 이목을 의식하여 가계경제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경조금을 과다하게 지출한다. 문제는 경조사에 과도한 지출 관행들이 고소득층에서 시작되어 사회의 다른 계층에 의하여 모방됨으로써 확산을 가져오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으로까지 확대되어 생계문제보다 체면유지를 위해 지출을 마다하지 않게 된 데 있다. 소득수준과 대비하여 경조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지출의 확대를 넘어 과소비의 한 형태로 해석된다. 따라서 경조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특히 고소득층의 경조금 지출 규모를 줄이는 데 착안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조금 수수관행이 집단의 세를 구축하거나 사회적 지위와 세력을 가진 자의 과시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정의례에 있어 금전을 주고받으며 상부상조하는 일은 나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회의 일부 상류층 및 세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안이 대사를 치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직연, 학연을 걸고 행사장으로 찾아와 축의금 또는 조의금이라는 미명하에 뇌물성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더구나 상류층이나 사회 세력층이 경조금 수수를 자신들의 지위나 권력의 과시수단과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수단으로 악용하여 사회적으로 違和感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립을 위하여는 가정의례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 우리 사회의 지도층 및 부유층의 솔선수범이 필수조건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경조금 문화의 폐해는 다른 어느 계층보다도 사회 지도층이 심각하다. 경조금 문화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함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위나 권력의 과시수단과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부 사회 지도층의 왜곡된 관행에 대한 개선은 제도적인 제재로서 접근할 수 없으며,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인데, 이는 현재 시도

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계몽운동이나 감시활동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는 사회적 영향을 과시하기 위한 무분별한 하객 또는 조객 초청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초청대상을 가족, 가까운 친척, 지인으로 한정하고 이들 이외에는 경조금을 주고 받지 않는 의식운동을 점차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하객 또는 조문객 초청행위의 제한과 더불어 청첩장 발송이나 신문이나 인쇄물을 통한 부고 행위도 제한되어야 한다. 경조금 전달의 불편과 교통혼잡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개선방법의 하나로, 우체국을 통한 경조사카드 보내기를 실천하는 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경조금 지출관행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지라도 가능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사회의 각 집단에서 집단 내 경조금의 지출한도 및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싶다. 특히 사회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종사자에서부터 경조금 과다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전 총무처가 발표한 방안과 같이 공무원, 회사, 학교, 단체, 조직 등 사회집단이 집단 구성원의 평균 수입을 고려하여 경조금 지출한도와 경조금 지출대상 범위를 정하고 경조금 지출규모를 직급별로 또는 지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경조금 수수를 현물화 내지 상징화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축의금의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혼인 당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주는 방향으로 하고, 축의금과 더불어 진정어린 축하를 전하는 인사말을 동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조금 문제는 그로 인해 금전적 및 심리적 피해를 입는 층도 있지만 반면 경조금 관행이 존속되기를 바라는 층도 있으며, 또 실제로 경조금 관행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같이 상반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법적 또는 제도적인 장치만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서는 안된다.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계층들의 상호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내고 건전한 경조사 문화를 정립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IMF 한파를 극복해야 하는 현실점에서 우리는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젖어 지나치게 물질주의를 강조하는 경조사 관행을 지양해야 한다. 전통적 미풍양식을 간직한다고 하여 과거 형식적인 가정의례의 모습을 고집하는 사고방식보다는 경조사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지키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건전한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參 考 文 獻

- 김모란,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 김문조, “자본주의사회의 과소비분석”, 『세계의 문학』 44, 1987 여름, pp.160~179.
- 김용학, “사회연결망 분석의 이론틀: 구조와 행위의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1집, 1987.
- 이필도·이현송·배화옥, 『가정의례의 경제적 비용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이현송·배화옥,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경조비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1994, 1997.
- 최현숙, 「한국의 사적 원조연결망에 있어서의 상례부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96, 1997.

_____, 『한국의 주요경제지표』, 199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전가정의례 정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공청회 자료 96-11, 1996.

Summary

An Analysis of Mutual Aid Expenditure of Urban Households

Hwa-ok Bae·Pil-do Lee

Mutual aid, which has been given as a means of congratulations or condolences at various family rituals in the past, has recently taken to being a ostentation means of sharing social status and power and being an extension of the social network. The distorted custom of giving money at family rituals has resulted in as increased household expenditure and feeling of social class discrimination.

Therefore, the mutual aid expenditure problem should be approached concentrating on finding the cause and working out counter-measures from a societal perspective. In this study, we try to identify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distorted mutual aid customs, to analyze main causes of the problem, and to provide policy measures regarding the practice of prudent family ritual customs.

To identify the mutual aid expenditure problem, we utilized raw data from the 1996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argetting information on the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expenses of a total of 3,935 urban household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each urban household had an expenditure of 39,300 won per month and 472,000 won per year for mutual aid, in 1996. The amount comprised 1.8% of the monthly average income (2,152,700 won) of urban households. Thus, the grand total of mutual aid of urban households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4,177 billion won, when the yearly expenditure of 472,000 won is multiplied by 8,850 thousand households with more than two persons, in 1996.

The mutual aid expenditure was reviewed, considering various economic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result was that those aged over 50, with high income and consumption and with an educational level of college and univers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ported a expenditure of mutual aid than those aged less than 50, with low or middle income and consumption and with an educational level of middle and high school graduation in all other cities. Men expend much more for mutual aid than women and dual income earners' households expend much more than single income earner households in urban areas. Public officials, administrative and clerical workers expenditure of mutual aid is double the amount of casual and manual workers. In particular, public officials pay the highest mutual aid expenditure among the work groups. This suggests that settlement of sound mutual aid customs could be obtained targetting the public officials group.

For policies, first we suggest the prohibition of inviting excessive guests to ceremonies and the noticing of weddings and deaths in newspapers. Another suggestion is to persuade those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including high ranking officials and leaders, to participate voluntarily in practicing prudent family rituals by limiting the amount and scope of mutual aid. The implementation of prudent family rituals will be obtained through the strong will of the general people.